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할 필요성을 긍정한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일본 오사카고법 독물카레사건 판결 -

집단적 과열취재(미디어스크럼)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편집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 채용 등 취재보도의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일본 와카야마시(和歌山市)의 독물(毒物)카레사건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았던 林眞須美 피고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일본 오사카(大阪)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6월 28일 사형을 언도한 1심·와카야마 지방법원 판결(2002년 12월)을 지지,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할 필요성을 긍정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서지방의 민방 6개사와 NHK 오사카 방송국은 즉각 판결을 비판하는 견해를 발표했으며 林 피고는 상고했다.

1998년 7월 와카야마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여름제사 모임에서 카레를 먹은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비소(砒素)중독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으며, 동년 12월 카레를 조리한 냄비에 비소를 섞어 넣었다는 이유로 林 피고가 살인죄로 체포·기소되었다.

이 사건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민방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편집한 비디오테이프의 일부를 林 피고의 진술증거로 신청하고, 와카야마 지법이 이를 채용한 것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고법에서는 새로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테이프는 채용하지 않으면서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보도의 자유는) 본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헌법상의 다른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자유가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는 일도 하는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도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7월 5일자)

□

만화책의 노골적인 성표현은 실사표현물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외설로 인정될 수 있다

-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

노골적인 성표현을 한 만화를 판매하여 외설도화(猥褻圖畫) 반포(頒布)혐의를 받은 출판사 '松文館' 대표 貴志元則 피고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일본 도쿄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지난 6월 16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언도한 2004년 1월의 1심·도쿄지방법원 판결을 파기, 「본건 만화책이 노골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사(實寫)표현물이 갖는 외설성의 정도에 비하면 양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형하여 벌금 150만엔(약 1천500만원)을 언도했다.

1심·2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동사 편집국장, 전속계약의 만화가와 공모하여 2002년 성교장면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만화책 약 2만부

를 판매했다. 피고 측은 ① 외설물 반포 등의 죄를 규정한 형법 제175조에 의한 표현규제는 위헌이며 ② 만화책의 성적자극의 정도는 실사표현물보다 강도가 약해 외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헌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과거의 최고재판소 판례 등을 답습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외설물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만화는)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성적자극을 완화할 수 있으나 본건 만화책의 경우 묘사가 지나치게 생생하여 독자의 정서나 관능에 작용을 주고 있어 사상성·예술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 외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만화책이 외설도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다투어진 케이스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었다.

(신문협회보 2005년 6월 21일자)

□

약해(藥害) 에이즈 보도로 피소된 두 언론사중 마이니찌 신문사는 승소, 新潮社は 패소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약해(藥害)에이즈 문제를 고발한 일련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安部英 전 帝京대 부학장(2005년 4월 사망)이 마이니찌신문사를 상대로 4천 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 6월 21일 安部 씨의 상고 수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기사의 진실성과 진실 상당성을 인정하여 安部 씨의 청구를 기각한 2심·도쿄고법의 판결(2003년 3월)이 확정되었다.

1심·2심 판결에 의하면 문제가 된 것은 「가열혈액제제(加熱血液製劑)의 개발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혈우병(血友病)환자에게 에이즈 감염피해가 확대되었다. 지연의 한 원인은 安部 씨가 연구가 지연되고 있는 메이커를 위해 임상실험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정(調整)'을 한 데 있다」고 지적한 1988년 2월 5일자 마이니찌신문 조간.

이어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한 1996년 3월 12일자와 16일자 각 조간과 선데이마이니찌(17일호) 기사도 문제가 되었다.

2심은 모든 기사에 대해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安部 씨가 자신의 성과가 아님에도 혈우병 치료에 관한 성과를 가로채기 했다고 논평한 선데이마이니찌의 보도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학회 제1인자인 安部 씨가 신랄한 논평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표현의 적절성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위법성에 저촉될만한 인신공격이나 인격비난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6월 16일 마이니찌신문사에 대한 승소결정과는 달리 같은 문제를 둘러싼 週刊新潮의 보도로 인해 安部 씨에게 피소된 新潮社(발행원)에 대해서는 3백 만엔(약 3천 만원)의 지불을 명한 1·2심 판결을 지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언론사 측의 패소를 확정시켰다.

(신문협회보 2005년 6월 28일자)

□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논평도 면책될 수 있다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약해(藥害)에이즈 문제를 둘러싼 잡지기사와 단행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安部英 전 帝京대 부학장이 저널리스트인 사쿠라이 요시코를 상대로 1천 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6월 16일 사쿠라이 씨에게 4백 만엔의 지불을 명한 2심·도쿄고법 판결(2003년 2월)을 파기하고 安部 씨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저널리스트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중앙공론」(1994년 4월호)에 게재된 「내가 방청한 '도쿄 HIV 소송' 재판(최종회)」 제하의 기사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집필한 단행본 「에이즈범죄 혈우병환자의 비극」(초판 1994년 8월 발행).

필자 사쿠라이 씨는 安部 씨가 ① 가열혈액제제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ミドリ十字」(당시)에 맞춰 임상실험을 늦췄다 ② 임상실험시기에 재단설립을 위한 기부를 제제(製劑) 메이커로부터 모금했다 ③ 제제 메이커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열제제의 승인에서 뒤처지는 메이커가 생기지 않도록 임상실험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사실을 지적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安部 씨는 메이커에 대해서는 절대적 우위에 있었으며 그러한 입장에서 기부를 강요했다면 큰 문제이다. 安部 씨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전에 매혹되어 의사의 정신을 팔아버렸는가」등의 의견과 논평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사쿠라이 씨가 취재를 통해 ① ~ ③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는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도 그 범위를 일탈(逸脫)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6월 21일자)

□

소년범죄보도에 대한 미·일 언론인 비교조사에서 실명·익명의 판단에 현격한 차이 나타나

소년범죄보도에서 관련 소년의 이름을 실명(實名)으로 하느냐 익명(匿名)으로 하느냐는 문제는 오늘날 각국의 사회사정, 문화 등에 의해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현안 중의 하나다.

지난 2004년 12월에 실시된 미국과 일본의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소년범죄보도 의식비교 조사 결과, 양국의 언론인들 간에는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소속사의 실명보도 최저연령 방침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 언론인들은 소년의 실명보도를 금지한 소년법 61조 규정대로 20세라고 답변한 반면 미국 언론인들의 회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하고 있는 탓인지 최저연령을 18세로 한다는 회답(25%)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10여 개의 회답으로 갈렸다.

둘째, 최저연령에 대한 개인 의견에서는 양국

언론인들 공히 최저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59%, 일본 24%)는 의견을 비롯하여 11세부터 20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소년범죄 8건 (미국 3건, 일본 5건)에 대한 소속사의 실명보도 여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본이 “회사는 실명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일치된 회답을 보인 반면 미국은 전체적으로 “실명보도를 한다”와 “모르겠다”는 2개의 회답으로 갈라졌으며, “익명보도를 한다”는 회답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수로 나타났다. ‘회사방침’에서는 미·일간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실명보도를 한다”는 회답이 과반수를 넘은 것은 「17세의 소년이 연설 중인 국회의원을 칼로 살해한 사건」, 「17세의 소년이 고속버스를 납치하여 승객 1명을 칼로 살해한 사건」, 「16 ~ 18세 소년 6명이 여고생을 납치·감금하여 쇠약사(衰弱死) 시킨 사건」 등 3건이었다. 특히 「국회의원 살해사건」은 8건 중 가장 많은 69%가 실명보도를 한다고 회답했다. 가해자가 11세의 소년인 사건에서는 실명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회답자가 2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개인의견’에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실명보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일본인의 회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16~18세 소년 6명이 여고생을 납치·감금하여 쇠약사시킨 사건」에서는 48%가 「실명보도를 해야 한다」고 회답해 「익명보도」의 39%를 상회했다. 이 사건 외에는 실명보도 지지가 익명보도 지지를 상회한 회답은 없었다.

한편 미국 측의 ‘개인의견’에서는 2개 사건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실명보도 지지가 많았다. 특히 「국회의원 살해사건」과 「여고생 납치·감

금사건」에서는 91%가 실명보도를 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11세의 소녀가 교내에서 동급생의 목을 잘라 살해한 사건」에서는 실명보도 지지가 44%로 과반수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익명보도 지지의 38%보다는 많았다.

(신문연구 2005년 5월호 pp.44~48)



제한된 조건에서 가능한 한도의 입증취재를 했다면 취재결과는 모두 믿을만 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일본 히로시마고등법원 판결 -

초등학교 교내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찔다는 등으로 아시히 신문에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 히로시마고법 제3부는 지난 5월 25일 「기사의 주요부분은 충분한 입증취재가 되었다고 하겠으며 기사에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신문사에 1백 만엔의 지불을 명한 1심·야마구찌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히신문은 2001년 6월 14일자 조간에서 「업자(業者), 세 어린이를 차다」 등의 제목으로 남성이 6학년 여학생 3명에게 「귀엽게 생겼구나」라고 말을 걸면서 엉덩이를 가볍게 찼다는 등의 내용을 익명으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가 원고를 특정할 수 있어 명예를 훼손했고, 기사에 진실성의 증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1심의 판단을 따랐으나,

진실 상당성의 점에서 「기자는 취재 당시의 제한된 조사방법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한도의 입증취재를 했고, 여학생들의 설명의 신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취재결과는 모두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교장이나 보호자 등) 각 진술이 모두 여학생들의 설명에 의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신용해서는 안 되며, 입증취재가 불충분하다」고 진실 상당성을 부정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6월 7일자)

□

회계법인의 영구보도금지 청구 기각

- 영국 대법원 -

Accountancy Age가 회계 회사인 Deloitte & Touche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Deloitte & Touche가 낸 'VNU title' 영구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월, Accountancy Age은 Deloitte & Touche가 청구한 임시 보도금지령으로 인해 산업 감시 기관인 Joint Disciplinary Scheme(JDS)에서 발견한 자료를 'VNU title'을 통해 보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Deloitte & Touche의 영구보도금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Accountancy Age는 Deloitte & Touche가 1990년대 중반, 카지노 회사인 Capital Corpo-

ration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JDS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을 기사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Capital Corporation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던 Deloitte & Touche 측 관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과 Capital Corporation에서 발표한 시장 보고서가 의심스럽다는 점 등이 기사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Deloitte & Touche와 Accountancy Age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Deloitte & Touche 측은 “이 기사가 회사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어 Deloitte & Touche 측은 “5년 동안의 JDS의 수사이후 Capital Corporation의 재정 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에서는 아무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며 “법정 절차를 밟기 전에 대중에게 증거가 없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발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Accountancy Age의 편집장인 Damian Wild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져올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만약 회계에 관한 업무가 대중의 눈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보여야 하는 것이라면 확고하고 독립적인 감시자가 외부로부터의 방해 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amian Wild는 “우리는 만약 보도금지요청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언론 전반에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가져왔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하고 “판사가 우리와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Press Gazette 2005년 5월 6일자)

□

“경찰의 취재 자료 압수 결정은 정당” 유럽재판소 판결 논란

자신의 취재결과와 자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날을 꿈꾸던 저널리스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 기자인 Hans-Martin Tillack가 European Commission(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하 EC)이 1년 전 벨기에 경찰을 통해 그의 브뤼셀 사무실과 집에서 파일, 컴퓨터 디스켓, 이메일 기록, 노트북을 압수했던 것에 대해 반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European Court of Justice(유럽재판소)은 EC가 기자의 취재자료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Stern지의 브뤼셀 특파원이었던 Tillack은 지난 2002년, EC와 통계 부서인 Eurostat 내의 부정행위를 내부서류를 통해 폭로했었다. 그러자 EC내의 반(反) 부정행위 기관인 Olaf가 소송을 냈고 이에 브뤼셀의 경찰은 Tillack의 자료를 압수한 것이다. Olaf는 Tillack이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 공무원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Tillack은 이 소송내용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럽 기자 연합의 총 사무관인 Aidan White는 “이 사건은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불충분한지 보여주고 있다”며 “EC는 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의 기밀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것은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dan White는 “이번 판결은

기자들과 그들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 공정한 판결이 아니며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또 Olswang의 미디어 소송 담당원인 Dan Tench는 Press Gazette지를 통해 “유럽 재판부는 너무나도 편협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Tench는 “법원은 실제로 자료를 가져간 것은 벨기에 경찰이며 Olaf는 신고서만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Tench는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ench는 “당신이 만약 EC를 취재하는 기자이고 그들의 부정을 폭로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면, 수집한 자료를 확실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역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영국으로 가져오면 비록 어떤 사람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자료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조언했다. 그는 또 “EC의 부패에 관한 자료는 유럽재판소에서 별로 지켜줄 용의가 없는 것 같아 좀 실망스럽다”며 “자료는 보호되어야하고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기자가 수집한 정보들이 되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Tillack은 그의 자료를 돌려받기 위해 Strasbourg에 있는 인권 재판소에 벨기에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유럽 기자 연합은 최근 벨기에의 법이 저널리스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Tillack의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Press Gazette 2005년 5월 6일자)

